

감사원

현지조치

제 목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업무 부적정

소관기관 대통령경호처

조치기관 대통령경호처

내용

가. 업무개요

대통령경호처는 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에 따라 [표]와 같이 관리 대상 부속청사 등 의 장소에 주식회사 **한국**(이하 “(주)**한국**” 라 한다) 등 통신 3사의 무선통신장비(통신중계기)에 대한 사용허가를 하고 통신 3사로부터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를 받고 있다.

[표] 무선통신장비 관련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 현황

(단위: 천 원)

통신사	한국(주)	주 한국	주 한국	계
2020년	15,950	12,870	12,870	41,690
2021년	17,410	14,718	13,933	46,061
계	33,360	27,588	26,803	87,751

자료: 대통령경호처 제출자료 재구성

나.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

「국유재산법」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,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매년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.

또한 「국유재산법」 제72조에 따르면 무단점유자에 대해는 그 재산에 대한 사용료나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

제73조의3에 따르면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된다.

따라서 대통령경호처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함으로써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사용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했다.

다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

그런데 이번 감사기간(2022. 2. 21.~3. 11.) 중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실태를 확인한 결과 대통령경호처는 2021. 11. 2. 국유재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(주) ~~간간~~에 변상금 17,825,400원¹⁾을 부과하여 2021. 11. 23. 징수가 완료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원인을 파악하였다.

그 결과 (주)~~간간~~가 2011년 8월경(날짜 모름) 대통령경호처 정보통신부서의 요청에 따라 부속청사에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하고도 국유재산 담당부서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았고 정보통신부서도 이 사실을 국유재산 담당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.

이후 2021년 9월경 (주)~~간간~~가 부속청사에 설치한 무선통신설비에 전기장애가 발생하여 그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국유재산 담당부서는 (주)~~간간~~가 무선통신장비를 설치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해 「국유재산법」 제73조의3에 따라 최근 5년간(2016년 11월~2021년 10월까지)의 사용료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사용료는 징수하지 못하였다.

1) 2016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의 사용료 14,854,500원의 120%

2. 조치할 사항 대통령경호처장은 앞으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완성 소멸되어 이를 징수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유재산 사용허가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(현지주의)